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6.(금)

검 토 안 건	발 의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주)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춘주)

1. 검토안건

- 안건명 :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
- 제출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 (의안번호 : 21-135)

3. 제출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마포복지재단

다. 출연 필요성

- 1) 마포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보통 재산 출연 지원
- 2) 지역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모금·배분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라. 출연금액 및 내용

- 1) 출연금액 : 1,499,181천원
- 2) 출연내용 : 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지원
 - 기본재산 : 1,000,000천원
 - 보통재산 : 499,181천원
 - 인건비 334,032천원, 운영비 145,916천원, 사업비 19,233천원

【 출연금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세부내용	비고
합계	1,499,181		
복지재단 기본재산	1,000,000	· 기본재산 적립	
복지재단 보통재산	499,181		
복지재단 운영	인건비	334,032	· 기본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운영비	145,916	· 사회보험료, 급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 광열비, 도서인쇄비, 회의운영비, 소모품비 등
	사업비	19,233	· 복지재단 홍보 및 나눔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초기사업비

※ 출연동의안 구의회 의결 후,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의·결정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 3)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마포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포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규정에 의거 예산의 출연이 가능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조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
- 재단 출연금액 및 내용
 - 2022년도 출연금은 1,499,181천원으로 복지재단 기본재산 10억 원과 보통재산 499,18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본재산은 4년 동안 50억 원 출연을 목표로 2021년에 최초로 20억 원 출연에 이어 내년에는 1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예정이고,

〈 마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본재산	5,000	2,000	1,000	1,000	1,000

- 보통재산은 마포복지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7명) 334,032천원, 운영비 145,916천원, 사업비 19,233천원 등 총 499,181천원을 산정하여 출연할 예정임.
- 마포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11월 2일 출범한 마포복지재단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설립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에서 재단 설립 시 우려하였던 사항과 집행부에서 요구하였던 재단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구민에게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마포복지재단 설립 개요
2. 관계법령

【붙임1】 설립개요

마 포 복 지 재 단 설 립 개 요

- 명 칭 : 마포복지재단
- 설립형태 : 자치구 출연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
- 설립주체 : 마포구
- 설 립 일 : 2021년 11월 2일
- 기본재산출연 : 50억원
 - '21년 20억 출연, 이후 매년 10억씩 3년간 출연 예정
 - ※ 시 설립허가 기본재산 최저기준 : 20억원
- 운영재원 : 구 출연금, 이자수입, 후원금, 기타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구출연금)
-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이사회, 감사, 사무국
 - 임 원 :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 직 원 : 2개 팀 7명
- 주요사업 [우선순위]
 -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모금·배분)
 -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 사업
 - 지역복지 역량 강화 및 복지공동체 강화
 - 사회복지시설 운영 · 관리
 - 지역복지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6.(금)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주)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춘주)

1. 검토안건

- 안전명 :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
- 제출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 (의안번호 : 21-120)

3. 제출이유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이 최초 민간위탁 이후 6년이 경과하고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재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5년(2022. 4. 1. ~ 2027. 3.31.)

※ 최초 민간위탁일 : 2008. 4.18.

2)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3)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기부식품 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 식품 등의 기부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및 후원개발
- 그 밖에 기부식품 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등

4)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마포구 월드컵로 235 농수산물시장 내(1층)
- 규 모 : 매장 154.70 m^2 및 창고 63.05 m^2
- 위치도



5) 소요예산(2022년 예산 기준)

- 예산액 : 195,629천원(시비 78,014천원, 구비 117,615천원)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195,629		
인건비	143,429	47,810천원×3명	-시비 71,714천원 -구비 71,715천원
운영비	50,600	4,217천원×12개월 ※관리비, 차량유지비, 공과금, 사업비 등	-시비 5,500천원 -구비 45,100천원
간판교체비	1,600	간판교체비용(1회성)	-시비 800천원 -구비 800천원

다. 세부추진일정

-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 : 2021.11.
-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 : 2021.12.~ 2022. 2.
- 협약체결 : 2022. 3.

5. 관계법령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다.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6. 검토의견

- 본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08년 4월 18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사무의 위탁기간이 6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참고로 본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이 시행되는 2022년 1월1일 이후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무의 재위탁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금번 회기에 제출됨.
- 따라서, 본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 자료 : 관련법규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2.8.3, 2019.6.12., 2020.1.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신설 202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1. 9. 8.(수)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주)

검 토 보 고 서

(보고자 : 전문위원 박춘주)

1. 검토안건

- 안전명 :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1. 8. 27.
- 회부일 : 2021. 8. 31. (의안번호 : 21 - 92)

3. 제출이유

주거기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인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의 운영사무를 역량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가칭)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기간 : 3년
-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3) 위탁시설 개요

가) 위 치: 마포구 아현동 282-20, 16, 19

나) 시설규모 및 세부사항

대지면적	271.69㎡	
연면적/건축면적	999.33㎡ / 114.32㎡	
용적률/건폐율	353.15%/42.08%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용도	오피스텔(12호), 다세대주택(11호) 근린생활시설(1호), 커뮤니티실(1호)	
주차대수	8대	
지구특성	준주거지역(애오개역217.2m, 아현역 299.5m)	
사업자	자선금영 건축사(대표 조성탄) / 02-385-2088	
준공예정일	2022. 4월	

※ 내공사 주택 확보 후 마포구 임대(주거공간 제외 무상임대)

4)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5) 소요예산 : 82,600천원(구비 100%)

- 최초년도 설치비: 64,500천원

- 연간 소요액: 18,100천원

(단위:천원)

합계	설치비(최초년도 소요예산)				사업비 (운영비)	기타 (업무추진비)
	소계	임시거소시설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82,600	64,500	44,000	11,500	9,000	17,800	300

다. 세부추진일정

- 운영기관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 : 2021. 12.
- 운영기관 선정 : 2022. 1.
- 주택계약 및 입주대상자 모집 : 2022. 4.

5. 관계법령

가. 주거기본법 제3조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9조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26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통합 돌봄을 위해 설치되는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의 운영과 관리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임.
- 위탁운영 시설은 (가칭)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으로 위탁 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범위는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
 -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은 노인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가족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주거와 돌봄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 기반 맞춤형 돌봄서비스(소통돌봄, 건강돌봄, 일상돌봄)의 제공과
 -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일시돌봄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상에게 임시거소공간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위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이 적합한 사업으로,
- 케어안심주택 운영에 있어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대상자들을 법의 취지에 맞게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1.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개요
2. 관계법령

참고자료 1.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개요

□ 운영방향

- MH마포하우징 확장형 주거사업 : 주택공급 + 돌봄·의료서비스 제공
- 마포형 모델 개발
 - ① 세대통합 주택: 노인·장애인·중장년·한부모·청년 등 다양한 세대 구성
 - ② 서로돌봄/상시돌봄이 가능한 주택
 - ③ 일거리가 있는 주택
 - ④ 주거와 임시거소(중간집) 통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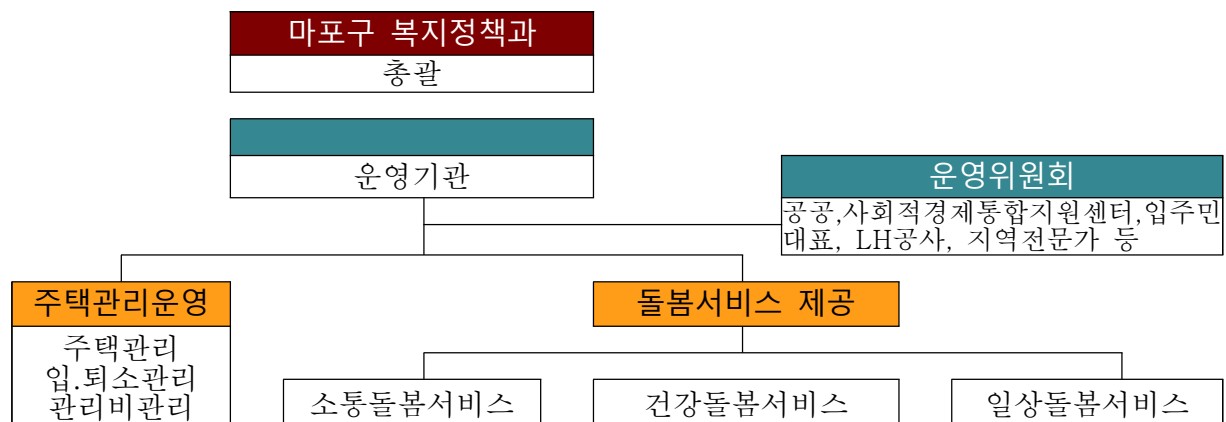
□ 사업대상: 주거 기반 돌봄이 필요한 가구

- 내공사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서 일상돌봄 및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자
- 퇴원, 부상,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으로 주거를 기반으로 한 일시적 돌봄(회복지원)이 필요한 자(임시거소공간)

□ 사업내용

- 주거 기반 맞춤형 돌봄서비스(소통돌봄, 건강돌봄, 일상돌봄)를 제공하여 시설이 아닌 살던 곳(마포)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지원
-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거주자 신체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설계 및 주택관리
- 병원·시설 퇴원 후 재활 및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살던 곳) 복귀 지원
-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위기상황(가정폭력, 강제 퇴거 등) 해소

□ 운영체계



참고자료 2. 관계법령

주거기본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9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7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주택의 임차)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와 협약을 통해 공사가 매입한 구 소재의 기존주택 등을 유·무상 임차할 수 있으며, 유·무상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주택의 관리) ① 매입·건설임대주택의 사용·수익을 위한 전반적인 보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1.2.4.>

② 매입·건설임대주택의 입주 후 일상 관리는 구청장이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2.4.>